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508

발의연월일: 2023. 3. 9.

발 의 자:김학용・김정재・이 용

서일준 · 엄태영 · 장동혁

김용판 • 구자근 • 김성원

정운천・金炳旭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 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의 일부를 각각 소득 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중 반도체 수출은 992억 달러로 전체 산업 수출의 19.4%를 담당하고 있고, 2013년부터 수출 비중 1위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육성 정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반도체 산업의 국가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반도체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0(중소기업은 100분의 30)으로 상향 조정함으로 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신성장사업화시 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기술사업화시설"로 한다.

3) 반도체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반도체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20(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 중 반도체 기술사업화시설에 관한 부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반도체기술사 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 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 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 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공제금액 2.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중견기업은 100 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다. 1)·2) (생 략) <신 설>

나. (생 략)

- ② ~ ④ (생 략)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 (현행과 같음)
- 3) 반도체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조에서 "반도체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20(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 -----

 -----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

 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기술사업화시설